상주시 공고 제2019-17호

담배소매업 폐업 및 신규사업자 신청 공고

「담배사업법」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, 아래 폐업 장소 및 인근 지역 내에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1월 4일

상 주 시 장

상주시장의인

○ 폐업자 내역

성 명	상 호	영업장 소재지	소매인구분	폐업일자	비고
안 * 자	상호없음	상주시 공성면 공성중앙로 112	일반소매인	2019. 1. 4.	

1. 접수기간: 2019년 1월 4일~2019년 1월 11일
2. 신청대상: 위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 희망자
3. 접 수 처: 상주시청 경제기업과(4층)
4. 구비서류
   -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(시청 경제기업과 비치).
   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, 건축물등기 및 건축물대장 각 1부.
   -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(임대차계약서 등).
   - 소매인 우선지정(장애인, 국가유공자)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명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.
5. 지정방법

  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되, 소매인지정에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지정

   ※ 추첨의 방법으로 소매인을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(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)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는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, 우선 지정 대상자가 2인 이상의 경우 공개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(다만,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이미 다른 장소에서 우선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우선지정을 받을 수 없음)
6.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경제기업과(☎ 537-740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